

##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0. 10. 27.(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 5. 회의내용

####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반복적 안전에 해당됨

#### ② 의결사항

#####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20-56(서)-252)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개정하기 위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나.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 사업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건 (2020-56(서)-253~254)

- 제2020-48차 방송통신위원회(2020. 9. 8.)에서 의결한 (주)채널에이 등 2개 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이유가 없으므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 원안과 같이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채널에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500만원
(주)케이비에스엔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억 2,000만원

**다.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56(서)-255~256)**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원주문화방송(주) 등 2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원주문화방송(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1,000만원
(주)현대미디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500만원